

# M&A의 유형과 사례

2009년 3월 발표된 한국은행의 M&A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8년 M&A 거래건수는 1,153건이고, 거래 금액은 419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거래금액은 다소 감소한 것이나, 거래건수는 2007년에 비하여 167% 증가한 수준이다. M&A 거래 건수가 증가 했다는 것은 M&A가 활성화 되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이 같은 M&A거래에는 여러 가지 거래유형이 숨어 있다. 이번호에서는 M&A 실제사례를 살펴 보면서 유형별 특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글\_ 신기훈 회계사

## - 자산인수 방식

자산인수 방식은 1997년 IMF상황 하에서 외국 기업이 국내기업 인수 시 많이 사용하였다. 기업인수 방식의 하나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와 공장설비만 사들여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 자산인수 방식은 기업전체를 인수하는 주식 인수나 부실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우량기업이 떠안은 자산부채 이전과는 구별된다. 자산부채 이전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정리할 때 우량은행은 정리대상 은행의 예금과 부채를 모두 떠안고 여기에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넘겨받는다. 그러나 자산인수 방식은 부실기업이 갖고 있는 과도한 부채나 종업원, 영업권 등을 인수하지 않는다.

사례\_ 인수법인 청원특수강(인수자)과 양도법인 삼미특수강(양도자)의 사례를 보면, 1997년 2월 삼미특수강과 청원특수강 간 자산양수로 매매계약을 체결 한다. 매각 내용은 강봉, 강관공장을 매각 대금 7,194억에 매각하고, 계약서상 고용승계는 배제하였다. 그로 인하여 해고된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1999년 1월 서울고법은 고용승계 판결하였고 최종 판결에서는 2001년 7월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을 파기 하였다.



## - 주식인수 방식

주식인수 방식은 타사의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시너지 창출과 신규 사업 진출 시 용의한 방법으로, M&A 인수 합병 유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주식인수 방식의 경우 인수 법인은 기업결합제한이나 기업결합신고 계열편입 조건을 사전에 검토하여야만 한다.

사례\_ 2004년 5월 한솔케미칼은 이눔티스 주주로부터 이눔티스 주식의 50.6%(구주 2,530,000) 인수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동년동월 한솔케미칼은 공정거래 위원회에 결합신고서를 제출 하고 이눔티스를 한솔그룹에 편입하게 된다.

## 영업양수도 방식

영업양수도란 어떤 기업이 주요 사업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부를 다른 법인에 매각하거나 매수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 다른 회사의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는 형태 즉 영업의 양수를 통해 진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런 영업양수를 통해 신규사업을 진출할 경우 인력 모집과 마케팅 망을 확보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요즘 신규사업을 진출하는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 또한 반대로 영업양수도를 통해 성장 한계에 봉착한 사업부를 매각하여 이 자금으로 기존 주력사업에 투자하는 자금을 확보하기도 한다.

사례\_ 2005년 서원아이앤비(양수)과 네오아이오(양도)는 영업양수도를 통한 M&A를 하게 된다. 서원아이앤비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가스, 철도, 지하철, 전력 자동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네오아이오는 SI업체이다. 네오아이오는 E-Biz사업부 일체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매각 대금은 25억이었다. 2005년 5월 서원아이앤비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양수도 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한다. 그러나 2005년 7월 서원아이앤비 주주총회에서 30% 이상의 주주들의 반대에 따른 주식매수 청구권이 부여된다.

이 같이 영업양수도 방식을 취할 경우는 주주의 반대(30/100)가 있을 경우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 주식 스왑 방식

주식 스왑 방식은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인수 하는 대가로 인수법인의 신주(유상증자)와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주식 스왑 방식은 사업의 시너지 창출과 신규 사업 진출 시 많이 사용되며, 증자를 통한 사업의 인수로 자금의 유출이 없다. 단지 현물 출자 시 법원의 인가(2~3주 소요)가 필요하다. 또한 양도자는 주식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비상장주식)에 주의 하여야 한다.

주식 스왑 방식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더욱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는 기업의 자금 경색을 낳게 되고 기업은 끊임없이 시너지와 새로운 사업에 따른 M&A를 시도하게 될 것이며, 그런 경우 아래와 같은 주식 스왑은 좋은 사례이다.

사례\_ 2004년 동부전자 구주와 아남반도체 신주와 맞교환한 사례를 살펴보자.

2004년 아남반도체는 사업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동부전자와 M&A를 진행하게 된다. 동부전자 주주는 동부전자의 구주를 아남반도체에 구주 현물출자를 하고 대가로 아남반도체는 유상증자(87,395천주)를 통하여 동부전자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한다. 당시 교환비율은 아남반도체 1주는 동부전자 0.8844주로 결정되었다. 2004년 2월 이사회결의를 하고 2004년 법원의 인가 신청 2004년 7월 법원의 인가(동부전자 주당 4,422원, 아남반도체 주당 5,000)를 거쳐 합병하게 된다. 이는 유상증자 대가로 구주를 납입한 것임으로 상법상 현물 출자에 해당한 사례이다.